

의안번호	2211299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7. 14.
추계번호	25B36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물수 또는 추정)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하고, <u>그 추정액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함(제2항)</u> ※ 추정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 귀속 및 반환 등)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하고, 국고에 귀속되면 해당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국고 귀속일 전일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담보금 국고 귀속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27조(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등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 신체 등 인적 피해 또는 선박, 어구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2.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지역의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지원사업 3.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점검에 대한 지원사업 4.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의 복지 지원 및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	• 미대상: 현재 국고로 귀속 중인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수입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 귀속 및 반환 등)	—	
3	안 제27조(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안 제27조)

- 개정안은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추징금¹⁾ 및 제24조에 따른 국고귀속 담보금²⁾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³⁾(이하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①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산발전기금”이라 함)에 납입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영해 등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⁴⁾,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어업 단속 실적 및 불법어선 담보금 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불법어업 단속 실적

(단위 : 척)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2020	35	4	2	4	25
2021	108	4	5	23	76
2022	88	4	3	8	73
2023	113	9	3	12	89
2024	95	1	5	15	74

자료: 해양수산부

[표 2] 불법어선 담보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척)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담보금	12,349	2,460	7,898	3,532	7,970	7,732
어선 수	177	30	90	76	102	89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위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해당 개정안에서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사업의 대상·방법·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의 경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⁵⁾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⁶⁾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등 해양수산부에서 구성·운영 중인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없이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할 수 있음
- 별도의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 등에 따라서는 기본경비 등 해양수산부 내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할 수 있음
- (예시) 민간위촉위원 10명, 회의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시
회의참석수당: 300,000원⁷⁾ × 10명 × 2회 = 600만원/연

Ⅲ. 부대의견

□ 없음

-
- 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10.31.>
 3. 삭제<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7)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⁸⁾

□ 설치 현황

① 명칭		해양수산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02.11.14)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11.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⑦ 기 능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3명)	위원장(임명권자)	해양수산부장관, * 당연직 여부(√)		
	공무원 (총 16명)	해양수산부장관, 기재부·외교부·문체부·국토부(2차관), 과기부·산업부(1차관), 교육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차관)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4명, 업계 1명, 공공기관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명(28.6%), 청년 1명(14.3%), 비수도권 6명(85.7%),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5명(71.4%),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24.4. ~’25. 3.)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3회		
	개최장소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		
⑩ 예 산		위원회 별도 운영 예산 없음		

8) 해양수산부,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참고

□ 활동내역서

1.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5.3월말 기준)

－ 총 3회(본회의 : 출석 - 회, 서면 3회 / 분과위 : 해당없음)

* `24. 4월~`25. 3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7월 17일 ~ 26일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7명
개최장소	서면
회의 안건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안),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안), 2024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12월 17일 ~ 23일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
개최장소	서면
회의 안건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 2024년 해양지명 심의(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5년 3월 17일 ~ 31일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7명
개최장소	서면
회의 안건	`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 심의(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3년	1	1	—	1	—	—	—
2024년	2	2	—	2	—	—	—
2025년	1	1	—	1	—	—	—
총계	4	4	—	4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참고자료 2]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⁹⁾

□ 설치 현황

① 명칭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8조(15. 12. 23) ·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15. 12.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심의		
⑦ 기 능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심의 ·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해수부장관 * 당연직 여부(√)		
	공무원 (총 1명)	해수부장관		
	민간위원 (총 19명)	(직 종) 공공기관 2명, 유관단체 회장 10명, 소비자단체 2명, 학계 3명, 업계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8명(40%), 비수도권 10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2명(6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근거법률 신설(일부개정 ' 19.1.8 / 시행 ' 19.7.9) (해촉기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24.4. ~ '25. 3.)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4회		
	개최장소	서면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서면 4회				
⑩ 예 산('25년)		해당없음		

9) 해양수산부,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참고

□ 활동내역서

1.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개최 상세내역(`25.3월말 기준)

－ 총 8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4회 / 분과위 : 4회)

* '24. 4월~'25. 3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 3 ~ 5. 14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4. 11. 4 ~ 11. 6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제3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 2024년도 소금산업발전 시행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1. 25 ~ 12. 2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2023년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24년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 제3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 2024년도 소금산업발전 시행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4. 12. 16 ~ 12. 18 (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석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25년도 어선원재해보험 보험요율 조정(안) － '25년도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조정 및 제도개선(안) － 어업인안전보험 24년도 사업결과 및 25년도 추진계획(안) － 손실보전준비금 관리 운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2. 19 ~ 12. 24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25년도 어선원재해보험 보험요율 조정(안) - '25년도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조정 및 제도개선(안) - 어업인안전보험 24년도 사업결과 및 25년도 추진계획(안) - 손실보전준비금 관리 운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5. 2. 3 ~ 2.7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제2차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5~'29)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5. 2. 10 ~ 2. 11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25년소금산업발전 시행계획(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5. 2. 27 ~ 3. 6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제2차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 '25년도 소금산업진흥 시행계획 - '25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3년	1	1	-	1	-	-	-
2024년	5	3	-	3	2	-	2
2025년	3	1	-	1	2	-	2
총계	9	5	-	5	4	-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